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장

제37호 2019. 10. 11(금)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19-1699호 도로굴착사업계획신청 공고 ----- 1
- 남원시 공고 제2019-1704호 도로지정공고 ----- 2
- 남원시 공고 제2019-1709호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
- 남원시 공고 제2019-1722호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32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공고 제2019-1699호

도로굴착사업계획신청 공고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지하매설물(전기, 전화,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을 설치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도로굴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굴착사업계획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8일

남 원 시 장

1. 신청대상 : 도로굴착 사업대상(전기, 전화,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등)
2. 신청기간 : 2019. 10. 8. ~ 2019. 10. 28
3. 구비서류 : 도로굴착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
4. 접 수 처 : 남원시청 건설과
5. 신청요령 : 현장방문

가. 건물 신축 등에 따른 지하매설물(전기, 전화,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의 설치 공사를 위하여 도로굴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물 관리부서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산의 추가 확보, 사업계획의 변경, 시민생활관련 민원사항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사항은 1월초에 별도로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조정하게 됩니다.

6.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건설과(063-620-65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남원시 공고 제 2019 - 1704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08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이해관계인		
							지 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2019-1 2	남원시 죽향동 176-4(대)	임*모	2019-건축과- 신축신고-353	15	4.0	16	남원시 죽향동 176-4(대)	16	임*모

남원시 공고 제2019 - 1709호

『남원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에 맞게 지방건축위원회 구성 인원 조정 및 임기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4조)
- 나. 상위법령에 맞게 건축심의대상 및 심의요건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7조)
- 다. 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9조)
- 라. 상위법령에 맞게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조항 및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15조, 안 제16조)
- 마. 상위법령에 맞게 건축허가 수수료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19조)
- 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신고업무 추가 및 불합리한 규정 삭제 (안 제20조)

- 사.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21조)
- 아.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명칭 및 용어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26조, 안 제27조)
- 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35조)
- 차. 옹벽 및 공작물 등에 준용 등에 관한 사항 중 태양광발전시설 중량 조정 (안 제37조)
- 카. 상위법령에 맞게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조정 (안 제4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30일까지** 의견을 남원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건축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6582), FAX(063-620-6719) 및 직접방문 등

4.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의견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9. 10.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건 축 과 장

1. 개정이유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에 맞게 지방건축위원회 구성 인원 조정 및 임기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4조)
- 나. 상위법령에 맞게 건축심의대상 및 심의요건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7조)
- 다. 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9조)
- 라. 상위법령에 맞게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조항 및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15조, 안 제16조)
- 마. 상위법령에 맞게 건축허가 수수료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19조)
- 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신고업무 추가 및 불합리한 규정 삭제 (안 제20조)
- 사.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21조)
- 아.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명칭 및 용어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26조, 안 제27조)
- 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35조)
- 차. 옹벽 및 공작물 등에 준용 등에 관한 사항 중 태양광발전시설 중량 조정 (안 제37조)
- 카. 상위법령에 맞게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조정 (안 제4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10. . ~ 2019. 10.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4) 성별영향평가 :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00명”을 “1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년으로 하
되,”를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
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조의2제1항 및”을 “영 제6조의2제1항, 제2항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증축 또는”
을 “증축하거나”로, “법령 등의 규정”을 “법령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인
하여 제31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을 “법 제57조에 따라 제30조에서 정하
는 면적”으로, “증축 또는 개축”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본 조례 제정”을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7년 4월 11일”로, “제31조에

다른”을 “제31조에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을 “개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8.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분의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제16조제2호 중 “법 제60조 및 제61조”를 “법 제61조”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검사(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는 제외한다)”를 “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을 위한 현장 조사 및 검사

제21조제3항 전단 중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 남원건축사회의 회원”을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건축사”로 한다.

제25조제5항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전단 중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1미터**”를 “**2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0.5배**”를 “**1배**”로, “**0.25배**”를 “**0.5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에**”를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로, “**0.4배**”를 “**0.8배**”로, “**0.2배**”를 “**0.4배**”로, “**0.5배**”를 “**1배**”로, “**0.25배**”를 “**0.5배**”로 한다.

제37조제2항 단서 중 “**4톤**”을 “**2톤**”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개정 2010.4.27., 2014.4.2. 2017. 6. 16>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제24조 관련)

용도	구조	면적	허용지역	기타
주차장	철골조립식	제한없음	경관지구는 불가	불 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정함
하원	철골조립식	100제곱미터 이하	경관지구는 불가	불 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정함
관리사무실 (주차장, 하원, 체육시설)	철골조립식 또는 콘테이너	30제곱미터 이하	경관지구는 불가	불 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정함
기계보호시설	철골조립식	300제곱미터 이하	경관지구는 불가	불 1층 및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정함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	제한없음 (다만,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	제한없음	제한없음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것에 한정함 (소화활동·소방차 진입 등 「소방관련법」 및 「도로법」 그 밖의 관련법에 저촉사항 없는 것)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시설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	제한없음	공장부지내	천막형태가 아닌 일정 내구성을 갖춘 구조 허용(「건축법」 및 「소방관련법」 등 그 밖의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

※ 공통사항

- 1) 옥상부분에는 설치 불가(단, 공장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
- 2) 연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함
- 3) 존치기간은 3년 이하로 하되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이 존치기간을 연장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u>100명</u>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u>2년</u>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u>다만, 해당 분야 전문가는 이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u></p> <p>⑤·⑥ (생략)</p> <p>⑦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 등은 영 제5조의5제6항을 <u>준용한다.</u></p> <p>⑧ (생략)</p>	<p>제4조(구성) ① ----- ----- ----- <u>150명</u> -----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 --<u>3년</u>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 . <단서 삭제></p> <p>⑤·⑥ (현행과 같음)</p> <p>⑦ ----- ----- --- <u>따른다.</u></p> <p>⑧ (현행과 같음)</p>
<p>제7조(건축심의대상 및 심의요건 제한) ① ~ ③ (생략)</p> <p>④ 제1항에 따라 건축심의대상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위원</p>	<p>제7조(건축심의대상 및 심의요건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p>

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 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중앙건설기술심의 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및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나목에 따라 전라북도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3. 4. (생략)

⑤·⑥ (생략)

제9조(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 ③ (생략)

----- . --

--.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4.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9조(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같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같음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1항 및 영 제14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1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
4. 용도변경 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삭 제>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영 제6조의2제1항, 제2항 및 -----

-----.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
-- 법령등-----
--
3. -----

법 제57조에 따라 제30조에서 정하는 면적-----
----- 증축
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 5. 본 조례 제정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의 거리가 제31조에 따른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7년 4월 11일 -- 제31조에서 정하는 -----

- 6. ----- 개축하는 -----

-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 8.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분의 용도 및 시설기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에게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이하 “업무대행”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11조 및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2.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 및 검사(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는 제외한다)

3. ~ 8. (생략)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로 선임할 수 없으며, 선임된 업무대행 건축사는 해임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 「건축사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기간을 통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

-----.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2. -----

----- 검사

3.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산하여 3개월을 초과하는 사람

2. 업무대행건축사에서 해임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제21조(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하되,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 남원건축사회의 회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④·⑤ (생략)

제25조(건축지도원) ① ~ ④ (생략)

⑤ 건축지도원의 복무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부터 제58조까지를 준용한다.

⑥ (생략)

제2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

제21조(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공
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건축사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25조(건축지도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따른다.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

여 개최한다. 다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필요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서면협의로 협의회를 같음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7조(대지 안의 조경) ① (생략)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1. ~ 12. (생략)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14.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대지 안의 조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12. (현행과 같음)

<삭제>

1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미관지구의 도로변의 대지 안의 공지부분에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경우에는 조형수 목으로서 수고 3미터 이상, 수관폭 1미터 이상의 교목을 3미터 이내마다 줄지어 심어야 한다. 이 경우 수목당 10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을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중전의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⑤ ~ ⑦ (생 략)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② (생 략)

③ 영 제86조제3항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으로 한다.

⑤ 영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

-----.

1. ~ 3. (현행과 같음)

4. 경관지구-----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2미터 -----

④ -----

----- 1배 -----
----- 0.5배 -----.

⑤ --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 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I.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 분				
		신설		강화	○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안전경제건설국 건축과 국 장 : 지방서기관 이형우 과 장 : 지방시설사무관 서광인 담 당 : 지방시설주사 양근식 작성자 : 지방시설주사보 이석선					
4. 근거법령 등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건축법 제27조(대지의 조경)					
5.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	건축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 건축물을 사용하는 시민					
6. 규제 존속기한	남원시 건축 조례 폐지 시까지					
7. 종전 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p>《종전규제》</p> <p>○ 제27조(대지 안의 조경)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p> <p>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p> <p>《개정규제》</p> <p>○ 제27조(대지 안의 조경)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p> <p>13. <삭 제></p>					

II. 평가요소별 규제 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배경과 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시 조례 제27조에서 대지 안의 조경 대상 건축물을 정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례 규정 삭제 필요

나.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항 삭제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해당없음

나. 규제의 실현가능성

- 해당없음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로 대체 가능 여부 : 해당없음

나. 규제의 다른 방법으로의 목적달성 가능여부 : 해당없음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해당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해당없음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해당없음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여부 : 해당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대지 안의 조경을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을 시군 조례로 정하고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조례 규정 삭제는 규제로 작용하는 것은 아님

○ 타 시도 사례 : 삭제중임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 해당없음

규제영향분석서

I.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 분				
		신설		강화	○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안전경제건설국 건축과 국 장 : 지방서기관 이형우 과 장 : 지방시설사무관 서광인 담 당 : 지방시설주사 양근식 작성자 : 지방시설주사보 이석선					
4. 근거법령 등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5.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	공동주택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 공동주택 분양을 받은 입주민					
6. 규제 존속기한	남원시 건축 조례 폐지 시까지					
7. 종전 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p>《종전규제》</p> <p>○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p> <p>③ 영제86조제3항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p> <p>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으로 한다.</p> <p>⑤ 영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및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으로 한다.</p> <p>《개정규제》</p> <p>○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p> <p>③ 영제86조제3항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p> <p>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p> <p>⑤ 영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및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p>					

II. 평가요소별 규제 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배경과 원인)

- 공동주택 인동간격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시 조례 제 35조에서 건축물 높이의 0.5배 등으로 정하였으나 일조, 통풍, 사생활 침해 등 공동주택 입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인동간격 조정 필요

나.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공동주택 인동간격을 건축물 높이의 1.0배로 확대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해당없음

나. 규제의 실현가능성

- 공동주택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 또한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인동간격을 충분히 확대하고 있음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로 대체 가능 여부 : 해당없음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서의 목적달성 가능여부 : 해당없음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해당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공동주택 입주민 주거환경 개선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공동주택 입주민 주거환경 개선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여부 : 해당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 공동주택의 채광확보 등의 확보를 위하여 인동간격 등을 시군 조례로 정하고 있음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은 규제로 작용하는 것은 아님

- 타 시도 사례 : 전북도내 모든 시군 인동간격은 건축물 높이의 1.0배 이상임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 해당없음

규제영향분석서

I.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 분				
		신설		강화	○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안전경제건설국 건축과 국 장 : 지방서기관 이형우 과 장 : 지방시설사무관 서광인 담 당 : 지방시설주사 양근식 작성자 : 지방시설주사보 이석선					
4. 근거법령 등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예의 준용)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예의 준용)					
5.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	공작물축조신고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 건축물을 사용하는 시민					
6. 규제 존속기한	남원시 건축 조례 폐지 시까지					
7. 종전 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p>《종전규제》</p> <p>○ 제3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 준용)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중량이 8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계를 말한다)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만, 태양광발전시설은 4톤 이상으로 한다.</p> <p>《개정규제》</p> <p>○ 제3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 준용)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중량이 8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계를 말한다)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만, 태양광발전시설은 2톤 이상으로 한다.</p>					

II. 평가요소별 규제 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배경과 원인)

- 공작물축조신고 대상 중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시 조례 제37조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일 경우 4톤 이상으로 정하였으나 자연재난(태풍, 지진 등) 증가함에 따라 이에 건축물의 구조 안전 필요

나.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공작물축조신고(태양광발전시설) 대상 중 중량물 4톤 이상을 2톤 이상으로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해당없음

나. 규제의 실현가능성

- 공작물축조신고(태양광발전시설)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인 후 신고를 득할 수 있음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로 대체 가능 여부 : 해당없음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의 목적달성 가능여부 : 해당없음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해당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건축물을 사용하는 시민의 안전성 확보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건축물을 사용하는 시민의 안전성 확보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여부 : 해당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태양광발전시설)은 시군 조례로 정하고 있음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규제로 작용하는 것은 아님
- 타 시도 사례 : 전북도내 모든 시군 태양광발전시설 중량을 제한하고 있음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 해당없음

남원시 공고 제2019 - 1722호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남 원 시 장

1. 제정이유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인 안숙선 명창의 예능과 판소리를 전승·보존하고 소장품 전시를 위해 건립한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위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안 제3조)
- 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안 제9조)
- 다.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안 제11조)
- 라. 소장품 수집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안 제13조)

3. **입법예고기간** : 2019. 10. 10. ~ 2019. 10. 30.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우편번호 : 55738
- (2) 주 소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063-620-6707),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직접 방문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문화예술과(☎063-620-57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9. 10. .
 제출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1. 제정이유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인 안숙선 명창의 예능과 판소리를 전승·보존하고 소장품 전시를 위해 건립한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위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안 제3조)
- 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안 제9조)
- 다.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안 제12조)
- 라. 소장품 수집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19. 10. . ~ 2019. 10. . (20일간)
 - 결 과 :
 - 2) 비용추계서 : 붙임
 - 3) 규제예비심사 :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인 안숙선 명창의 예능과 판소리를 전승·보존하고 소장품 전시를 위해 건립한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이하 “명창의 여정”이라 한다)은 남원시 광한북로 20 일원에 둔다.

제3조(기능) 명창의 여정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숙선 명창의 예능과 판소리 전승·보존 및 소장품 전시
2. 국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3.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공연활동 지원
4. 국악 관련 간행물 제작·배포
5.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명창의 여정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기관·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명창의 여정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정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명창의 여정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

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날
4. 임시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 휴관일 10일 전까지 남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관람시간) ① 명창의 여정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명창의 여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개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① 명창의 여정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감면 대상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 및 행위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창의 여정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음주한 사람 또는 감염병 환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만 7세 이하 어린이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고성 등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

5.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훼손하는 사람

6. 그 밖에 관람의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9조(프로그램 및 공연) 명창의 여정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악 관련 프로그램 및 공연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시장은 명창의 여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관련 행사에 한정하여 법인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명창의 여정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명창의 여정의 시설을 사용할 때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수집 등) 시장은 국악과 관련된 자료 또는 물품을 구입·기증·대여·기탁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제13조(보관 및 관리) ① 시장은 소장품이 훼손·분실·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제 예비심사 검토의견서

- 검토대상** :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상위법령** : 해당 없음
- 검토 방향**
 - 규제의 신설·강화 및 시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포함 여부
- 검토의견** : **비 심사대상**
 - 문화재를 전승·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가 없으므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이 아님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안숙선 명창의 여정은 남원시장이 관리·운영한다.

○ 관련조문

-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관리 및 운영)

2. 비용 추계결과

○ 개관연도 예산 : 142백만원

- 인건비(기간제근로자) : 39백만원

- 사무관리비(홍보물제작, 운영물품 구입 등) : 22백만원

- 공공운영비(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 : 16백만원

- 행사운영비(상설국악공연 등) : 52백만원

- 자산취득비(체험용 악기 구입 등) : 13백만원

○ 연도별 예산

- 2019년 : 142백만원(인건비, 일반운영비, 물품 및 자산취득비 등)

- 2020년부터 : 200백만원(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3. 재원 조달 방안

1. 재원조달계획 : 시비 예산

2.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 2019년 : 시비 142백만원

- 2020년부터 : 시비 200백만원

3. 시설내 자체수입 : 미정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0	0	0	0	0	0	
국 비	0	0	0	0	0	0	
도 비	0	0	0	0	0	0	
시 비	142	186	189	189	189	895	
자체수입(입장료)	0	0	0	0	0	0	
기타수입	0	0	0	0	0	0	
세 출	142	186	189	189	189	895	
인 건 비	38	91	91	91	91	402	
사무관리비	22	31	31	31	31	146	
공공운영비	17	16	16	16	16	81	
행사운영비	52	46	46	46	46	236	
자산취득비 등	13	2	5	5	5	30	
재원 조달	142	186	189	189	189	895	
의존 재원	소 계	142	186	189	189	189	895
	국비	0	0	0	0	0	0
	도비	0	0	0	0	0	0
	시비	142	186	194	194	194	910
자체 수입	소 계	0	0	0	0	0	0
	지방세	0	0	0	0	0	0
	세외수입	0	0	0	0	0	0
	사용료수입	0	0	0	0	0	0
	체험료수입	0	0	0	0	0	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9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원시 공고 제 2019 - 1727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이해관계인		
							지 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2019-1 4	남원시 노암동 558-3(전)	이*주	2019-건축과- 건축신고-356	11.3	0.35	4	남원시 노암동 558-3(전)	4	이*주